

정보통신대학원 학칙

제정 1992. 8. 27

개정 1995. 7. 13

개정 2001. 6. 1

개정 2003. 2. 12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기본목적에 따라 정보통신에 관한 첨단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정보통신분야의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 정보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본 대학원은 포항공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이라 한다.

제 3 조(과정) 본 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칭함)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 4 조(학위수여)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조(정원 및 전공분야)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석사학위 과정의 정원 및 전공분야는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전공별	정원
석사	정보통신학과	110명

제 2 장 입학·재입학

제 6 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7 조(입학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동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 8 조(입학지원절차) 본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기간에 전형료와 함께 제출하고, 소정의 입학전형에 치루어야 한다.

1. 입학지원서
2.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4. 재직(또는 취업예정) 증명서(산업체 재직자에 한함)
5. 기타 본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 9 조(입학전형) 입학지원자의 전형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칭함)은 필요에 따라 일부전형방법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1. 학업성취에 대한 서류심사
2. 필기시험
3. 전공구술시험

제10조(입학허가)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지원자의 입학을 허가한다.

제11조(입학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인학생 입학) 외국인학생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에 명시된 서류외에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의 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전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TOFEL성적(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2. 출신대학 교수 2인이상 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서

제13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퇴학 또는 제적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정원을 고려, 매학기초 소정의 기일내에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다만, 제18조 제3호 및 제4호의 제적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②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교과내용을 참작하여 그 학점을 재사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기간에 병영의무 수행을 위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 3 장 등록 · 휴학 · 복학 및 자퇴 · 제적

제14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중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필하여야 한다.

제15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는 기간이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일반학기의 신청학기과 동일한 학기중에 군입대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군입대 휴학으로 간주하고 장기해외지사근무, 장기해외출장으로 인한 휴학은 그 증빙에 의하여 1개 학기의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6조(복학) ① 휴학기간의 만료 및 휴학사유의 소멸로 복학을 원할 때에는 당해학기의 등록기간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 할 수 있다.

② 군제대 복학은 제대후 1년 이내에 한하여 허가하며 군제대 일자가 수업일수 1/4 이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자퇴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1. 전조 제15조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자
2.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3. 재학년한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제18조의2(재심청구) 제18조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제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적통보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수업, 학점 및 수료

제19조(교과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재학년한) 본 대학원의 재학년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제21조(수업년한) 본 대학원의 수업년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단, 1년차에는 계절학기를 포함 3학기 수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수업시간) 본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이상(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학기당 취득학점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매학기 6학점이상 18학점 이내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계절학기) 계절학기는 8주이내로 실시하고, 9학점이내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26조(수료학점)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의 2종으로 교과학

점 24학점, 연구학점 12학점이상으로 한다.

1. 교과학점은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교과과정의 과목을 통해서 취득한 학점을 말한다.
2. 연구학점은 논문연구, 세미나, 실험실습 등의 연구활동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말한다.

제27조(학점인정) 학점인정은 강의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C°이상과 S를 받은 과목의 학점만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7조의2(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을때는 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 시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가시험은 다음 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재수강) 재수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과정의 수료) ① 학칙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이 B°(3.0) 이상인 자는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과정의 수료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제29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등을 참작, 부여하며 등급과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A+	A°	A-	B+	B°	B-	C+	C°	C-	D+	D°	D-	F
평 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

② 논문연구, 세미나, 실험실습 등 연구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의 성적은 S(합격) 또는 U(불합격)으로 부여한다.

③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한 때에는 잠정적으로 I(미완)의 성적을 부여한다.

④ 수강신청후 9주 이내에 수강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W(포기)로 부여한다.

제29조의2(수강포기) ① 학생은 개강 후 4주째부터 9주이내에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받아 수강을 포기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W(포기)로 처리한다. 단, 3주이내의 수강포기는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절학기에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2주이내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장 수업년한 초과재학

제30조(등록의무) 삭제 (2003. 2. 12)

제 6 장 연구과정 · 공개강좌

- 제31조(연구과정) ① 본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한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 ② 연구과정의 연구생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심사 및 전형을 거쳐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연구생은 매학기 석사학위 과정에 개설되는 교과목 중 3과목 이내를 수강 연구하여야 한다.
- ④ 연구생은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청강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연구실적이 양호한 연구생에게는 별지서식(1)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32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기간·수강정원·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 공고한다.

제 7 장 징 계

- 제33조(학사경고) ① 대학원 학생으로서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B⁺(3.0)에 미달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 ② 재학기간중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적할 수 있다.
- 제34조(징계)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 8 장 대 학 원 위 원 회

- 제35조(구성) 대학원 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 제3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

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7조(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칙·학위수여규정을 비롯한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입학 및 수료·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3.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연구과정·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생상별 및 장학에 관한 사항
7. 등록금에 관한 사항
8. 교과과정 편성, 개편,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를 소집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일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9 장 기 타

제39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공과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일반) 학칙을 준용한다.

제40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학칙의 개정) 이 학칙의 개정은 사전공고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5년 7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중 제24조, 제25조는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서식 (1)

제 호

연구실적증명서

소 속 :

성 명 :

20 년 월 일생

연구과정 :

위 사람은 본 대학 정보통신대학원 연구과정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의 과정을 연구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포항공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장 ○ ○ ○ (인)

포 항 공 과 대 학 교 총 장 ○ ○ ○ (인)